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서남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공사(장기계속)]

□ 점검일시 : 2019.05.10 (금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한종수,정진혁,최영준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총인 1계열 방류관로 작업 시 되메우기 토사 (직경 100mm 이하)는 감리 확인 후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, 작업 구간에 추락방지시설 및 계단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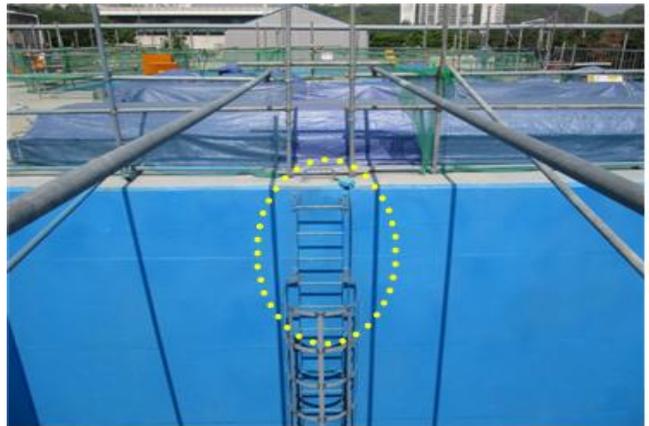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경사판 침사조에 설치된 수직형 사다리는 상부 약1m의 울이제거되어 있어 근로자 통행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울 설치 등을 보완하기 바라며,

- 약품투입동 외부에 설치된 수직형 사다리는 10m를 초과하므로 계단참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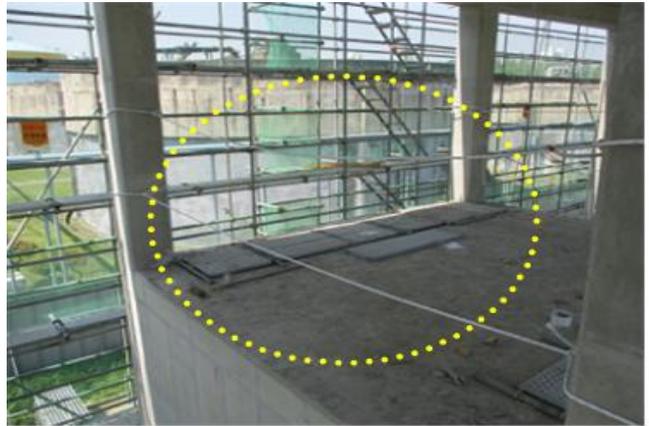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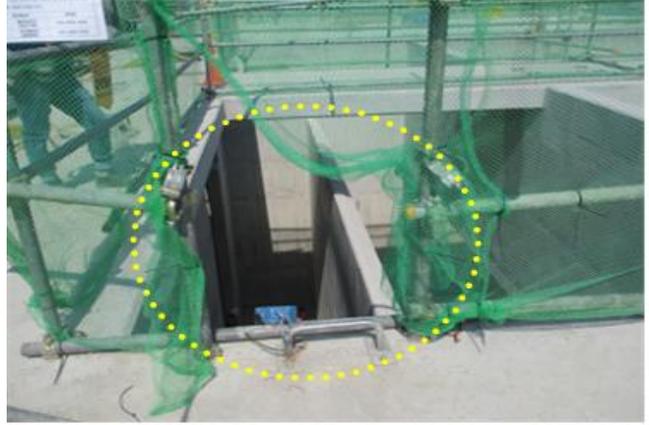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등의 구조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2계열 침전조 등 수직사다리 설치구간은 현장
여건상 근로자가 안전난간을 붙잡고 진입해야
하는 구조로 흔들림이 있거나 진입시 장애가 되
는 안전난간 및 방지망 등을 재정비하기 바람,
- 동바리 해체작업구간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
한 안전로프는 근로자들이 추락위험구간임을 쉽
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기
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
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3계열 방류수로 철근 배근 작업자는 외국인들
로 2m가 넘는 고소에도 조립을 해야 하는 상황
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비계를 상시 비치하고
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재발
방지 교육요망
- 3계열 하부 거푸집 작업자가 상부 작업발판으
로 상승/하강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없어 거



푸집을 밟거나 비계 외부로 추락위험이 높은 방법으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으로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고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/하 동시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70조(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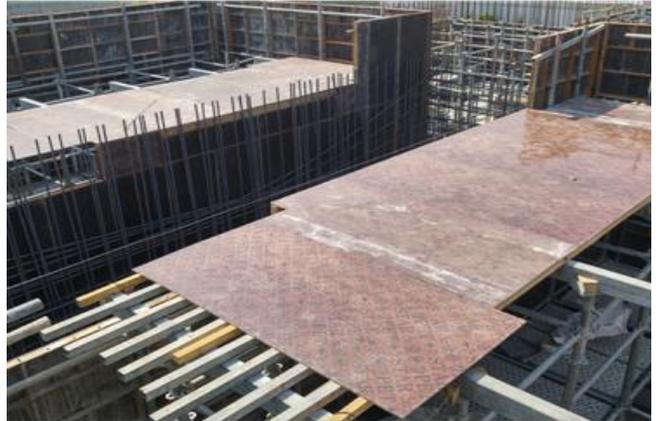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06(말비계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3계열 2G, 3G 공통으로 최상단 벽체 작업을 위해 명에 상단에 설치된 합판 거푸집은 설치 중에 안전시설이 미설치 되어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시킨 상태로 작업재개 전까지 출입을 통제하고, 안전시설을 완비하고 시공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3계열 2G, 3G 공통으로 시스템비계의 다음과 같이 불안정한 상태를 작업개시 전에 전수조사하여 재정비 후 작업요망

- ① 작업발판 간격이 기준인 3cm이상인 개소가 다수 있고, 추락부에 발판이 미설치된 개소
- ② 겹침 또는 구름다리용 작업발판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2지점 이상 고정이 안 된 개소
- ③ 가설통로 계단의 추락부 방호가 안 된 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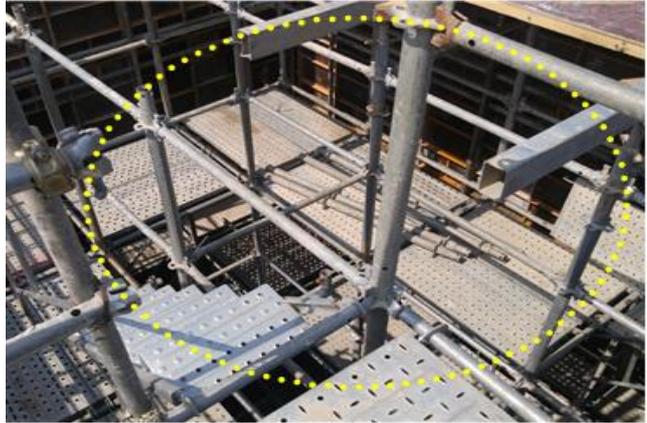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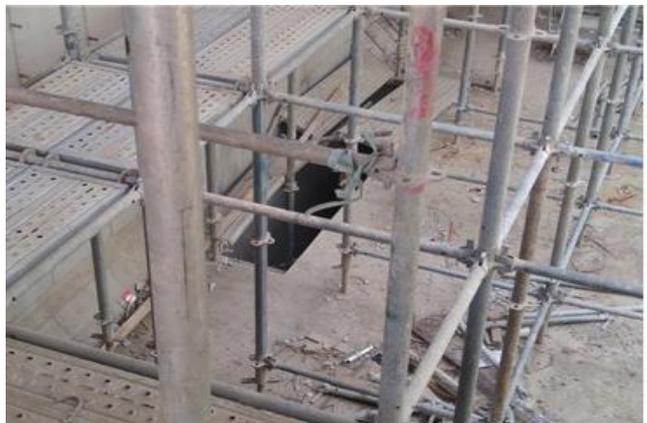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3계열 2G 최상단에서 상승/하강하는 가설계단 인근 안전난간의 고정이 미흡하여 흔들리는 상태이고, 계단 측면 단부는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재개 전에 보수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농축처리시설 내부는 현재 작업이 없으나 추락부, 개구부, 낙하물 방호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작업개시 전까지 내부 진입을 전면통제하고 안전시설 완비 후 작업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입수로 가변관로 흠막이가시설 단부의 안전 난간이 현재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추락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므로 규칙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조치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2계열 기계실 투입구 외부비계 작업통로에는 해체된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어 사실상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조속히 이동 조치하여 통로를 확보하기 바라며,

- 해체된 작업통로로 인하여 작업장 접근성이 미흡하여 근로자가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동시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유입수로 기초 철근배근 작업장의 통로 단차부와 PHC말뚝 홀을 라바콘으로 막아 놓은 개소는 발빠짐과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경사발판, 가설계단 등으로 안전한 가설통로 확보 후 작업요망

- 본 현장은 최근 작업자가 PHC말뚝 홀에 발이 끼어 상해가 발생한 현장으로 작업 중 말뚝 홀 관



리가 중요하나, 라바콘을 뒤집어 꽂아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고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발이 빠지지 않는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3계열 2G, 3G 공통으로 최상단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한 합판 거푸집은 제작 후 가설통로로 활용되므로 보 자리 단차부에 발빠짐으로 인해 전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2계열 진입계단 상부에서는 안전난간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고, 하부에서는 거푸집 해체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낙하 및 비래 재해우려가 있고

- 하부 거푸집 근로자는 구형 파이프 등이 불안정하게 쌓여져 있는 공간에서 상부에 합판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3계열 2G, 3G 공통으로 시스템 비계에 낙하물 방망이 없거나 훼손된 개소는 추가 설치하고, 특히 발판과 발판이 만나는 모서리부에는 발빠짐과 낙하물을 막을 수 있도록 방망 설치요망
- 또한 해당 작업장의 발판에 작업 폐기물과 공구, 자재 등이 낙하위험이 있도록 야적된 개소가 다수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정리요망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 전체적으로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에서 항공마대에 적재가 금지된 날카로운 내용물을 야적하고 있는 개소가 다수 있으므로 자재운반구를 비치하고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요망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13(자재운반구), 014(항공마대)



○ 가설비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2계열 외부 비계에 설치되어 있던 벽이음이 동바리 해체작업 등으로 임시 해체되어 있는 등 고정상태가 미흡하여 이동간 흔들림이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8(강관비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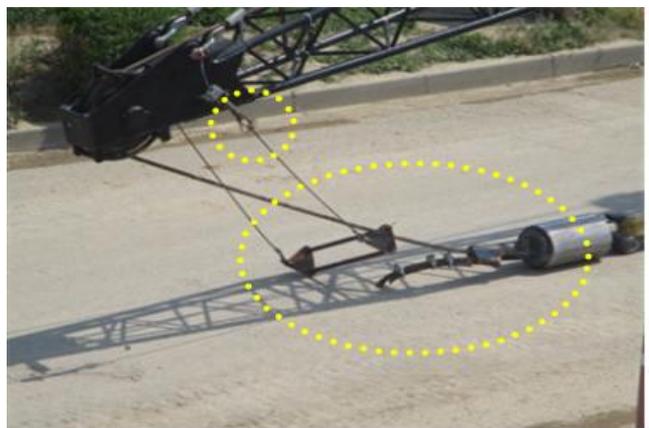
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크레인이 지상 지장물로 인하여 부득이 붐대를 낮춰 이동을 실시하는 동안 훅블럭, 권과방지장치 등이 지면과 저촉되어 끌려가는 과정에서 손상 또는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실시하기 바람,
- 사용하고 있는 슬링벨트는 육안상 손상이 있으니 재확인을 실시하기 바람, 건설기계 작업 또는 이동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(크레인 작업시의 조치),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,공통-031(벨트 슬링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입펌프장 주변에 적치되어있는 원형관 일부 구간에 전도 방지를 위해 설치한 구름방지시설이 미흡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제386조(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분전반 콘센트가 탄화되어 있어 사용 시 화재 우려가 있으니 보수 후 사용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·기구의 적정설치 등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협력사 사무실로 사용코자 설치중인 컨테이너 박스는 내부에 확산형 소화기(3m×3m, 1대)를 설치하고, 명판(업체명, 사용기간, 관리책임자 정/부, 성명 및 전화번호)을 부착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1(가설사무실)

